

## 【 2 】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3. .

제출자 : 양주시장

### □ 제안이유

- 양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과 공직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등 부조리 행위

#### ○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5조)

- 신고기한은 행위시점부터 3년이내, 서면 또는 유선등으로 구체적 사실을 신고

####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8조)

- 최고 3천만원범위내에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액의 2배로 사안에 따라 조정

####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사실이 아닌경우등의 제외사항등

#### ○ 포상금 지급자에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각종 서식 등 별도 규칙으로 마련

##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 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 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클린신고센터 또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주시 포상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양주시 공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포상금 수령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조리 송 부조리의 연결고리 형태가 이 조례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 한다.

## [별 표]

##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수수액의 2배 이내</li> <li>•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이내</li> </ul>
2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배 이내</li> </ul>
3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배 이내</li> <li>•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만원 이내</li> </ul>
4	•조례 제3조제4호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금의 횡령: 횡령액의 2배 이내</li> <li>•공금의 유용: 100만원이내</li> </ul>

※ 1건당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 한다.

## ◆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 2006.1.16 ]  
조례 제229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부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4조 (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 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9조 (환수) ①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별 표]

**부정부폐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구 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li> <li>·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li> </ul>
2	·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li> </ul>
3	·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li> <li>·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li> </ul>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2006.12.06 조례제12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산시 포상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 공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촉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금품수수액의 2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이내
2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배 이내
3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배 이내 ·알선·청탁행위신고 : 200만원 이내

\* 1건당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전화	(주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급(위)	
	소속		담당업무	
신고 내용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증빙자료	0			
위와 같이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20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안산시장 귀하				

## 부조리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200 - 호 접수일자 : 200 . . .

신고자 :

위와 같이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조리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안산시장 (인)

귀하